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송민경*

송민경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02-788-4573
smk27@assembly.go.kr

NARS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8호

2020년 2월 19일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요약

□ 설탕세(Sugar Tax)의 개념 및 등장 배경

- 설탕세는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6년 WHO 권고 이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
- 설탕세는 당(糖)류가 많이 함유된 음료의 소비 감소를 유도하여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됨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설탕세 주요 내용

- 영국은 『Finance Act 2017』 제25조~제61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2018년 4월부터 설탕세를 부과함. 설탕세율은 100ml당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8g 미만인 경우 l당 0.18파운드, 설탕 함유량이 8g 이상인 경우 l당 0.24파운드임
- 프랑스는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1613b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2012년부터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법률을 개정하여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식(sliding-scale)으로 설탕세를 강화함
- 이탈리아는 『2020 Budget Law』 제661조~제676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2020년 10월부터 설탕 음료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며, 완제품의 경우 100l당 10유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은 kg당 0.25유로를 부과할 계획임

□ 시사점

-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을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우선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설탕세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설탕세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재정 수입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설탕세 관련 법령 전문은 아래 법령검색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영국 「Finance Act 2017」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7/10/contents/enacted/data.htm>)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idSectionTA=LEGISCTA000027514824&cidTexte=LEGITEXT000006069577>)

이탈리아 「2020 Budget Law(Law n. 160 of 2019)」

(http://documenti.camera.it/leg18/dossier/testi/ID0009bvol_II.htm?_1580185678760#_Toc27564422)

1. 설탕세(Sugar Tax)의 개념 및 등장 배경

(1) 설탕세의 개념

- 설탕세(Sugar Tax)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되어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Sugary Drink Tax)로도 불림
 - 설탕세의 부과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나, 주로 당(糖)이 포함된 제품 kg(또는 l)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糖)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누진 방식의 과세가 이루어짐

(2) 설탕세의 등장 배경

- 가장 오래된 설탕세의 역사를 지닌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Chocolate and Sugar Product Tax)”를 과세하여 왔음¹⁾
- 201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었으며,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아시아, 남미 국가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Fiscal policies for Diet and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2016)”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²⁾
 - 설탕 음료 한 캔에는 약 40g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탕 첨가 음료를 하루에 한 두 캔 이상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제2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 더 높게 나타남
 - 비만과 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WHO 가이드라인은 당 섭취량을 총 에너지 요구량의 10%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장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경우, 설탕 음료의 소비 및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켜 영양 개선과 과체중·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음

[표 1] 설탕세 부과 주요 국가 현황

지 역	주요 국가(시행 연도)
유 럽	노르웨이(1922), 헝가리(2011), 핀란드(2012), 프랑스(2012), 영국(2018), 아일랜드(2018), 이탈리아(2020.10)
아시아	태국(2017), 필리핀(2018), 말레이시아(2019)
북·남미	미국 일부 지역-버클리(2015), 필라델피아(2017), 볼더(2017) 등, 멕시코(2014), 칠레(2014), 남아프리카(20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글로벌 정크푸드세 정책트렌드 분석 및 주요국 동향조사」, 『2018 농식품 수출 이슈보고서』, 2018, pp.43-46. 참조하여 재구성

1) 노르웨이 세무국(최종 검색일 2020.2.3),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vat-and-duties/excise-duties/>>

2) WHO, Fiscal policies for diet and the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technical meeting report, 5-6 May 2015, Geneva, Switzerland, 2016.; WHO, Taxes on sugary drinks: Why do it?, 2017.

2. 영국

(1) 도입 배경 및 연혁

- 영국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아동 비만³⁾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한 새로운 세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설탕세는 음료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설탕 함유량이 적은 음료가 수입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⁴⁾
- 2017년 예산안에 관련 규정이 도입(『Finance Act 2017』 제25조~제61조)되었으며, 2018년 4월부터 설탕세가 부과되고 있음
 - 설탕세를 통해 거두어들인 재정 수입은 학교 급식 개선 사업, 초등 체육 및 스포츠 개선을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됨⁵⁾

(2) 주요 내용(『Finance Act 2017』 제25조~제61조)

- 설탕세의 과세 대상은 생산과정에서 꿀이나 설탕⁶⁾을 포함한 음료로 100ml 당 5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제26조, 제29조)
 - 음료의 알코올 함유량은 1.2% 이하여야 함
 - 병이나 캔에 들어있거나 포장되어 있어 즉시 마시거나, 희석해서 마실 수 있는 음료여야 함
 - 물에 희석되어 있거나, 얼음, 이산화탄소 등과 희석 및 혼합하여 마실 수 있는 음료, 얼음으로 만들어진 음료 및 상기 방식들의 혼합 방식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말함
- 과일주스(과일퓨레, 탈수(dehydrated) 과일주스, 분말형 주스 포함), 야채주스, 우유 기반음료(우유 함유량 75% 이상) 및 두유나 아몬드 밀크 같은 우유 대체품(콩, 견과류 등 식물에서 추출된 음료로 100ml 당 적어도 120mg의 칼슘을 포함한 무탄산 음료) 등은 설탕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제30조)
-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가당음료 제조업자, 포장업자 및 수입업자이며, 연간 백만 0 미만의 음료를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자(small producer)의 경우에는 설탕세 납부 의무가 면제됨(제35조, 제37조)
- 설탕세는 설탕 함유량에 따라 100ml 당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 ~ 8g 미만인 경우 1 0 당 0.18파운드, 100ml 당 설탕 함유량이 8g 이상인 경우 1 0 당 0.24파운드가 과세됨(제36조)

3) 영국의 성인 비만율은 2016년 기준 26.2%로 OECD 국가 중 11번째로 비만율이 높은 나라이며(OECD Health Statistics 2018), 특히 10~11세 아동들의 1/3 이상(2018 기준, 34.3%)이 과체중이나 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UK 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

4) 영국 정부(최종 검색일:2020.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oft-drinks-industry-levy/soft-drinks-industry-levy>>

5) UK HMRC, "Sugar tax revenue helps tackle childhood obesity", Press release, November 20, 2018.

6) 설탕에는 자당(sucrose), 포도당(glucose), 과당(fructose), 유당(lactose), 갈락토스(galactose) 등이 포함되며, 스테비아(stevia), 아스파탐(aspartame), 수크랄로스(sucralose)와 같은 설탕대체물은 포함되지 않음

3. 프랑스

(1) 도입 배경 및 연혁

- 프랑스는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1613b조에 설탕세 관련 내용을 입법하고, 2012년부터 설탕을 포함한 음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
- 기존에는 가당음료 100ℓ 당 정액을 과세(flat-rate)하였으나⁷⁾, 2018년 7월부터(2017년 12월 30일 법률 개정)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따라 차등 과세(sliding-scale) 하도록 설탕세 과세방식을 변경함
 - 설탕세의 과세 방식이 누진 방식으로 강화된 것은 비만 퇴치도구로서 설탕세의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되며, 참고로 프랑스는 2017년 케이터링 등에서 설탕이 함유된 음료의 무제한 제공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⁸⁾ 설탕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2) 주요 내용(『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1613b조)

- 설탕세의 과세 대상은 설탕 또는 합성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로 병, 캔 등 소매 판매용 용기에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식당, 주점 등을 통해 판매되는 음료⁹⁾임(제1613b조. I)
 - 알코올 함유량 1.2% 이하(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알코올 함유량 0.5% 이하)인 음료에 대해 설탕세가 부과됨
- 우유 기반음료(유아용 우유, 마시는 요구르트 등), 스프, 의료 처방전등에 따라 제공되는 음료, 두유(2.9% 이상의 단백질 함유) 및 그 밖에 개봉하지 않는 형식의 자판기 음료, 식당에서 컵 등에 따라 제공되는 음료, 면세구매 음료 등은 설탕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제1613b조. I)
-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프랑스 내에서 설탕세 과세 대상 음료 등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사람들임¹⁰⁾
 - 프랑스에 해당 음료 등을 공급하는 프랑스 제조업자, 제3국에서 유럽 연합으로 음료 등을 수입하여 프랑스 시장에 제공하는 자,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여 프랑스에 배달하는 자, 케이터링 등 상업 활동의 맥락에서 고객에게 음료를 무료로 공급하는 주체 등은 설탕세를 납부하여야 함
- 설탕세는 설탕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차등 과세(sliding-scale) 방식임(제1613b조. II)
 - 100ℓ 당 설탕 함유량이 1kg 이하인 음료에 3.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설탕 함유량 1kg~4kg까지는 추가 설탕 1kg 당 약 0.52유로, 설탕 함유량 5kg 부터는 추가 설탕 1kg 당 약 1.03유로, 설탕 함유량 8kg 부터는 추가 설탕 1kg 당 약 2.05유로를 초과로 부과하는 구조임

7) 2017년의 경우 가당음료 100ℓ당 7.55유로의 세금이 부과되었음

8) 프랑스 법령정보(최종 검색일: 2020.2.3.),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3922943&dateTexte=&oldAction=rechJO&categorieLien=id&idJO=JORFCONT000033922548>>

9) 유럽연합(EU)의 상품분류 코드 CN 2009(과일 또는 야채 주스), 2202(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가 첨가 된 광천수 및 탄산수) 품목에 해당하는 음료

10) 프랑스 행정부(최종 검색일: 2020.2.3.),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32101>>

[표 2] 프랑스 설탕세율(2020년 1월 기준)

설탕의 양 (100ℓ 당kg)	1 이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초과
세금(€)	3.08	3.60	4.10	4.62	5.65	6.68	7.70	9.75	11.81	13.86	15.91	17.96	20.02	22.07	24.12	+2.05 (1kg 당)

자료: 프랑스 행정부(최종 검색일: 2020.2.3.),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32101>>

4. 이탈리아

(1) 도입 배경 및 연혁

- 이탈리아는 2020년 예산안 『2020 Budget Law(Law n. 160 of 2019)』 제661조~ 제676조에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한 세금 규정(Imposta sul consumo di bevande con zuccheri aggiunti)”을 도입하고, 2020년 10월부터 설탕 음료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임
 - 감미료가 많이 함유된 음료의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특히 미성년자의 건강에 해로운 음료 섭취를 제한하고 당뇨병, 비만 등의 예방을 통해 국가의 건강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취지임
- 이탈리아의 설탕세 논의는 2018년 이탈리아 당뇨병협회(SID), 국립영양사협회(ANDID), 이탈리아 예방 및 사회의학협회(SIPPS), 이탈리아 소아과연합(FIMP), 이탈리아 비만학회(SIO) 등 건강 관련 민간단체가 이탈리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설탕세 도입 건의안¹¹⁾으로부터 촉발되었음
 - 건의안은 아동 비만¹²⁾ 및 당뇨 발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영국의 설탕세와 유사한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가당음료에 대한 어린이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당초 건의안에서는 20%의 높은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탈리아 상·하원의 논의 과정을 거쳐 ℓ 당 0.1유로 수준으로 최종 세율이 조정됨
- 이탈리아 정부는 설탕세 도입으로 2020년 약 5,850만 유로, 2021년 약 3억 2,840만 유로, 2022년 약 2억 3,590만 유로, 2023년부터는 약 2억 7,530만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 주요 내용(『2020 Budget Law(Law n. 160 of 2019)』 제661조~ 제676조)

- 설탕세의 과세 대상은 설탕 또는 감미료가 포함된 알코올 농도 1.2% 이하의 무알코올 음료(과일주스, 탄산음료, 무알코올 맥주 등)¹³⁾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완제품 또는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임(제662조)
-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음료 제조업자, 포장업자, 구매자, 수입업자 등임(제663조, 제664조, 제666조)
 - 가당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자, 재포장 등을 통해 가당음료가 고객 또는 소매점으로 재판매되는

11) Il Fatto Alimentare, “Lettera aperta al Ministro della salute di medici, nutrizionisti, dietisti e operatori del settore per l’adozione di una tassa sullo zucchero”(최종 검색일: 2020.2.3.), <<https://ilfattoalimentare.it/wp-content/uploads/2018/10/Lettera-aperta-al-Ministero-della-salute.pdf>>

12) NHO(National Health Observatory)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이탈리아 성인의 35.3%가 과체중, 9.8%가 비만에 해당하며, 아동 비만률은 30%에 달함

13) 유럽연합(EU)의 상품분류 코드 CN 2009(과일 또는 야채 주스), 2202(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가 첨가 된 광천수 및 탄산수) 품목에 해당하는 음료

- 경우에는 해당 포장업자, 다른 유럽 연합 국가의 가당음료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자, EU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한 가당음료가 이탈리아로 최종 수입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설탕세의 납부 의무자임
- 다른 EU 국가에서 소비하기 위하여 직접 판매하는 수출 음료에 대해서는 설탕세가 적용되지 않음
 - 설탕세의 세율은 즉시 마실 수 있는 완제품의 경우 100ℓ 당 10유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은 1kg당 0.25유로임(제665조)

5.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설탕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나¹⁴⁾, 웰빙 열풍,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 등에 따라 설탕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류 섭취율 및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음
 - 우리나라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과체중 포함, 2016년)은 OECD평균(25.6%) 보다 높은 26% 수준이며, 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2030년에 약 9%(2016년 5.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함¹⁵⁾
 - 국민 평균 총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은 2007년 13.3%(59.6g)에서 2016년 15.2%(73.6g)로 증가하였으며,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 비율은 2016년 기준 전체 당류 섭취량의 19.1%(14.04g)에 달함¹⁶⁾
- 다만,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우선 설탕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설탕세 운영 효과에 대한 선행 검토를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및 프랑스의 경우, 설탕세 도입에 따라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음¹⁷⁾
 - 그러나 설탕세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지적,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감소 및 설탕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¹⁸⁾ 등의 반론이 존재함
- 특히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설탕세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설탕세로 거두어들일 재정 수입의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14) 참고로 제19대 국회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1904843)」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15) OECD Indicators,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2017.; 관계부처 합동,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대한민국 정부, 2018.7, p.1.

16) 관계부처 합동, 『제1차(16~20) 당류 저감 종합계획』, 대한민국 정부, 2016.4, p.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2020.2) 통계

17) 영국 정부는 설탕세로 인한 세수 증가를 연간 약 5억 파운드에 예상(2016년 예산안)하였으나, 실제 2018년 4월~11월(7개월) 동안 증가된 세수는 1억 5,380만 파운드 수준이었음(UK HM Treasury, "Sugar tax revenue helps tackle childhood obesity", Press release, November 20, 2018.). 영국 정부는 이를 설탕음료 제조업체가 선제적으로 음료의 설탕 함량 등을 줄였기 때문으로 평가함(Katie Morley, "Sugar tax making half as much as money as the Government expected", The Telegraph, November 20, 2018.); 프랑스의 경우 2018년 7월 설탕세 과세 강화에 따라 립톤 아이스티는 설탕 함유량을 40%, 휘타 등은 설탕 함유량을 30% 줄인 것으로 나타남("Sugary drinks tax in France already making impact", The Connexion, September 28, 2018.)

18) ECORYS, Food taxes and their impact on competitiveness in the agri-food sector(Final report), ECSIP Consortium, 2014.7.12. 참조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Foreign Legislation: Trends and Analysis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발간목록

호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14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2019.11.13.	신동윤
15호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 제정	2019.11.20.	김예경
16호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	2019.11.27.	최지현
17호	독일의 '신 포장재법(VerpackG)'	2019.12.4.	김경민
18호	영국의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제정	2019.12.11.	조서연
19호	싱가포르의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도입	2019.12.18.	김영석
20호	허위정보 해외 법제 현황	2019.12.25.	김유향
21호	미국의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First Step Act of 2018)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1.1.	박혜림
22호	EU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2020.1.8.	강지원
23호	미국 직업기술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1.15.	조인식
24호	독일의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PAuswG)」 개정	2020.1.22.	최정민
25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0.1.29.	이혜경
26호	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	2020.2.5.	박재영
27호	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2.12.	김유정
28호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2020.2.19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788-4510

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1721-14
ISSN 2671-9649



국회입법조사처